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57호 2019. 2. 8.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훈 령

○ 삼척시 훈령 제289호 삼척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 2

예 규

○ 삼척시 예규 제27호 삼척시장 선거공약관리지침 폐지지침 ----- 6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7

○ 삼척시 고시 제17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 10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01월 31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훈령 제 289호

삼척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척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정책질의답변,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시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은 추진단장이 수립하고, 추진단을 보좌하기 위하여 총괄 부서를 둔다.

③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는 추진단장이 지정하고,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제4조(공약추진단) ① 추진단의 단장(이하“추진단장”이라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단원은 공약사업 소관 국장, 소장, 실장 등이 되며,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 2. 공약사항 이행실적 평가 및 관리
- 3. 그 밖에 공약사항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현안해결 등

제3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제5조(공약이행 평가단 운영) ① 추진단장은 공약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 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별 일반주민 등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은 평가단 회의를 주재한다.

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변경 관련 검토 및 자문
- 2.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자문 등
- 3. 공약사항 추진내용 점검 및 추진이 미흡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건의 등

제6조(평가단의 임기 등) ①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2. 평가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천계획 수립) ① 추진단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 취임 100일 이내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삼척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② 추진단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 2. 실천계획의 총괄개요
-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④ 추진단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대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9조(실천계획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서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은 추진단에서 계획변경의 불가피성을 검토하고, 평가단의 검토자문을 거친 후 변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을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제4장 실천계획 이행

제10조(세부실행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11조(이행실적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실적 업데이트를 독려한다.

제12조(이행실적 공개) ① 추진단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연 2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시민들이 공약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의견 수렴) 추진단장은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

제5장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제14조(평가) 추진단장은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5조(자체평가) ① 총괄부서는 매년 초 전년도말 기준으로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분기별 자체분석 및 상반기 하반기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 환류) 추진단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결정된 공약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삼척시장 선거공약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01월 31일

삼척시장

삼척시 예규 제 27호

삼척시장 선거공약관리지침 폐지지침

삼척시장 선거공약관리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9 - 1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2. 8.

삼척시장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570 외 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2.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사전리 128, 127-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570	20190208	건물신축	20090626	문화재(영경묘) 명칭 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산75-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길 409-28	20190208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간주소		주소일	사유	도로명주소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계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사전리 128, 127-2	2건	20190208	건물신축	20090626	문화재(영경묘) 명칭 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표곡리 산75-8	1건	20190208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고시 제 2019 - 17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삼척시



-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명칭 : 남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위치 및 사업개요
 - 가.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30-4번지 일원
 - 나. 사업량 : 급경사지 정비
 - 1) 낙석방지망 : 807m²
 - 2) 낙석방지책 : L=46m
 - 3) L형측구 : H=2.3m , L=30m
 - 4) 아스콘포장 : A=167m²
-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 : 삼척시장
 - 나.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 4. 착공 및 준공예정일 : 2019년 2월 ~ 2020년 12월
- 5. 실시설계도서 열람 장소 : 강원도 삼척시 재난안전과
- 6. 다른 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 7. 사업효과 :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해소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 8.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명세 :불입참조
- 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위치도



10.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비 고
사업내용	- 보상협의 - 정비사업	- 보상협의	- 보상협의 - 정비사업	
사업비(천원)	91,000	20,000	71,000	

11. 유지관리계획

- 가. 정비공사 완료 후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을 조정하고 (필요시) 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
-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로 안전 및 유지관리 만전을 기함.

12. 준공된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삼척시장

13. 기타사항

- 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삼척시 재난안전과 (☎033-570-3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토지조서

번호	편입토지			지목	지적 (㎡)		소유자	
	시	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계			11필지		6,977	714		
1	삼척	남양동	129-9	중	957.0	30.0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6	재*교
2	"	"	130-3	대	73.0	29.0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3-57(남양동)	김*자
3	"	"	129-7	중	86.0	82.0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6	재*교
4	"	"	130-2	대	46.0	34.0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42	최*원 외 1
5	"	"	129-5	대	198.0	42.0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42(남양동)	남*진
6	"	"	129-8	중	211.0	65.0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6	재*교
7	"	"	129-16	중	255.0	193.0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6	재*교
8	"	"	108-1	전	4,395.0	66.0	삼척시	국
9	"	"	129-14	임	182.0	152.0	삼척시	국
10	"	"	129-15	대	528.0	10.0	삼척시	국
11	"	"	129-10	잡	46.0	11.0	삼척시	국

□ 지장물조서

번호	소재지		지장물명	수령 (년)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1	삼척	남양동	주택	-	1	동	삼척시 중앙로 173-57	김○자	
2	"	"	주택	-	1	동	삼척시 오십천로 442	남○진	